

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(전화번호:)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				
구 분 기술명	계정과목	자체 연구개발비		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⑨ 합계 (⑥+⑦+⑧)
		⑥ 인건비	⑦ 재료비 등		
합 계					

④ 공제세액						
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중소기업	⑩ 대상금액 (= ⑨)	공 제 율			⑭ 공제세액 (⑩ × ⑬)
			⑪ 기본율	⑫ 추가	⑬ 계 (⑪+⑫)	
			30%			
	중소기업 외의 기업	⑮ 대상금액 (= ⑨)	공 제 율			⑰ 공제세액 (⑮ × ⑱)
			⑯ 기본율	⑰ 추가	⑱ 계 (⑯+⑰)	
			20% 또는 25%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-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- 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-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) -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-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, 소프트웨어·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-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와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- 그 밖에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'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"⑥ 인건비"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'신성장·원천기술 코드(01)'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⑦ 재료비 등"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.
- "⑦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'⑦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'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'신성장·원천기술 코드(01)'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⑫, ⑰ 추가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(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)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⑯ 기본율"란은 20%(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%)를 적습니다.

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	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② 과세연도	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		
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					
구 분	계정과목	자체 연구개발비		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⑨ 합계 (⑥+⑦+⑧)	
기술명		⑥ 인건비	⑦ 재료비 등			
합 계						
④ 공제세액						
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중소기업	⑩ 대상금액 (= ⑨)	공 제 율			⑭ 공제세액 (⑩×⑬)
			⑪기본율 40%	⑫추가	⑬계 (⑪+⑫)	
	중소기업 외의 기업	⑮ 대상금액 (= ⑨)	공 제 율			⑰ 공제세액 (⑮×⑱)
			⑯기본율 30%	⑰추가	⑱계 (⑯+⑰)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-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- 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-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) -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-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-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-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작성 방법

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‘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’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 - "⑥ 인건비"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‘국가전략기술 코드(02)’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 - "⑦ 재료비 등"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.
 - "⑦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‘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’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 - "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‘국가전략기술 코드(02)’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 - "⑫, ⑰ 추가"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
(앞쪽)

과 세 연 도	. . . ~ . . .	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법 인 명 (상 호)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① 연구 과제명	② 기술 구분 코드	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			
	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지급액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	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④ 연구 과제명	⑤ 기술 구분코드	재료비 등		
		⑥ 총계(=⑦+⑧)	⑦ 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	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
합 계				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⑨ 연구 과제명	⑩ 기술 구분코드	⑪ 연구개발비				⑫ 금액	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
		상 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 착수일	연구 종료일		
합 계				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2)]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3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또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.

※ 공통 사항

가. “①,④,⑨ 연구과제명”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나. “②,⑤,⑩ 기술구분 코드”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“01”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“02”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가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약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
나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가. "⑦ 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"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·원천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으며, "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"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습니다.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.

나. "⑪ 연구개발비"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(재위탁 포함)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.

다. "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